

중소기업 보증공제 이용안내

“공공조달 보증서 발급비용 절감, 이제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에 맡기십시오!”

- **보증 종목** : 입찰보증, 계약보증, 하자보증, 선급금보증, 이행지급보증
- **주요 특징**
 - 민간 보증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증료, 최저보험료 10,000원
 - 출자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
 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조합원 기본요율의 5% 할인
 - 보증부금 납입시 보증한도 확대(최대 5배) 및 보증료 할인(0.2% ~ 30%)
- **보증한도** :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, 자본 및 신용등급에 따라 산출됨
- **거래방법** : 한도거래약정(우편 제출) 체결 후, 보증서 발급 신청(인터넷 또는 팩스)
 - ※ 약정체결시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는 당연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서명 필요(약정기간 1년)
 - 거래 전 준비사항
 - 직전년도 포함 3개년도 결산 재무자료 → www.findsystem.co.kr 통한 전송
 - 「개인사업자」·「자산 10억원 이하 법인」 → www.gbiz.or.kr 「사이버센터」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
- **구비서류**
 - 한도 약정시 : 한도거래보증약정서류 일체(본회 서식) * 간인 필요(법인인감, 개인인감)
 - * www.gbiz.or.kr > 정보마당 > 보증서식 > 한도거래 보증약정 서식 및 작성 예시 참고
 - 기타 서류 : 법인·개인 인감증명서,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※ 팩스로 송부 후 담당자 확인 필수, 담당자 확인 후 우편 원본 송부
 - 보증서 발급시 : 청약서(본회 서식),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**문의** :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(T. 02-2124-4342~4344, Fax. 0502-397-0000)
 - 주소 : (07242)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